

영등포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0.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당초 대림1동 청사와 독서실, 보건분소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재원의 한정성 및 대지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후면공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변경전

취득재산의 표시				취득목적 (취득용도)	취득예정 가 격 (천원)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대림동 899-2	대지	-	지하2층/ 지상5층 3,300㎡	대림1동 청사건립 (주민자치센터, 보건분소, 청소년독서실)	6,920,000	영등포구	2005.11.14 구의회결

● 변경후

취득재산의 표시				취득목적 (취득용도)	취득예정 가 격 (천원)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대림동 899-2	대지	-	지상3층 648㎡	대림1동청사 복합건축물증축 (주민자치센터, 보건분소, 청소년독서실)	778,186	영등포구	

■ 검토의견

- 본건은 영등포구의회에 2005년 11월 의결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의 당초계획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하는 안입니다.

당초계획은 동청사, 청소년 독서실, 보건분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청사와 독서실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5층, 연면적 3,300㎡(998평)로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증축)예정가격은 69억2천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변경 안을 보자면, 대림1동 청사의 후면공지 330㎡을 활용하여 지상3층의 건물연면적 648㎡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88.7%의 예산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공지를 활용함으로써 대지의 효율적 활용, 기존 건물 철거시 야기되는 부담감이 해소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밀접한 건물의 증축인 만큼, 층별 용도를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최초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할 때 본안건 대로 방침을 받았더라면 현재 변경안이 불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복합건물의 증축을 통한 건물의 가치 활용, 후면공지의 효율적인 사용, 공사비를 비롯한 취득가격의 절감 등을 도모한 것으로, 의결절차가 법적으로 부합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0. 9.

보고자 : 김 병 옥

붙임 :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